

##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| 접수일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처리기간 3개월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토지소유자              | ① 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|           | ② 생년월일<br>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③ 주소<br><br>(우) (전화번호: )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| ④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⑤ 면적(㎡)                   | ⑥ 지번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시·군계획시설에<br>관한 사항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⑦ 시설명     | ⑧ 편입면적(㎡)                 | ⑨ 결정시기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 실시계획인가일 | ⑪ 실효시기                    | ⑫ 단계별<br>집행계획상<br>집행시기 |
|                    |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제입안 신청 사유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귀하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### 작성 방법

- ⑦ 시설명란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.  
예) 도로·공원·학교 등
- ⑧~⑫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### 처리 절차

